全景的出对

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청북도 여자 탕은 상업 한 전혀 및 미을 나오 상업 등록 등에 관한 조리만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9년 4월 9일

나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11일

3. 제안이유
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한정면허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선정(안 제3조)
- 나.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 기준 및 선정(안 제4조 및 제5조)
- 다. 운임의 신고 및 차량(안 제6조 및 제7조)

5. 검토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 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 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및 같은 법 시행규칙

제23조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각각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음.
- 안 제3조는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였음.
- 안 제4조 및 제5조는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과 운행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, 특히 등록기준 차량대 수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대 이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는 운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7조는 한 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8조는 2개 이상의 시·군에 노선이 걸치는 경우 협의사항을 규 정하였음.
- 충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·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 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.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한정면허의 대상노선, 선정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, 운행계통 기준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.
-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입법예고('18, 12, 13,~'19, 1, 2,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-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 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안 제4조제2항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기준 차량대수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 1대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 및 같은 조 제4항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 4개소 이내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.
- 그 밖에 안 제3조제2항에 따른 한정면허 신청 및 안 제5조제2항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운송사업자만 신청할수 있는 조항은 조례 시행에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